

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소관기관 및 부서 :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국

2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8월 17일, 경상북도교육감

나. 회부일자: 2023년 8월 22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

(2023년 8월 30일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)

3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최규태

나. 제안이유

○ 「민법」과 「행정기본법」 개정('23. 6. 28. 시행)으로 나이 계산이 '만 나이'로 통일됨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조례 중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계산법 혼용으로 발생하는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원칙을 확립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○ 나이에서 “만” 표기 삭제

- 1) 「경상북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」(안 제 2조제4호)
- 2) 「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」(안 제7조)
- 3) 「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(안 제 43조의2제1항)

4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장중찬)

가. 제안취지

- 본 조례안은 「민법」과 「행정기본법」 개정(‘23. 6. 28. 시행)으로 나이 계산이 ‘만 나이’로 통일됨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조례 중,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계산법 혼용으로 발생하는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원칙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「경상북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」, 「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」, 「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등 3개 조례의 만 나이 규정을 일괄개정

다. 종합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민법」과 「행정기본법」에서 나이 계산을 ‘만 나이’로 통일하도록 개정함에 따라, 경상북도교육청 3개 조례에 일괄 반영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음.

「민법」과 「행정기본법」의 개정 전후 비교

「민법」		「행정기본법」	
개정 전	개정 후	개정 전	개정 후
제158조(연령의 계산점)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.	제158조(나이의 계산과 표시) ①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(滿) 나이로 계산하고, 연수(年數)로 표시한다. 다만,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(月數)로 표시할 수 있다.	<신 설>	제7조의2(행정에 관한 나이) 의 계산 및 표시)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(滿) 나이로 계산하고, 연수(年數)로 표시한다. 다만,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(月數)로 표시할 수 있다.

- 조례안은 연령에 대한 기준을 ‘만 나이’로 일괄 정비해 법령, 문서 등에서 계산법 혼용으로 발생하는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원칙을 확립하여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.
- 본 조례안은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 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등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7. 수정안의 요지 : 「없음」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「없음」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